

「2025년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」

소상공인 모집 공고(2차)

해외진출 초기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판로 진출을 위한 「2025년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.

2025년 5월 26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※ (필독)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

-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“소상공인24(www.sbiz24.kr)”를 통해 신청·접수 가능합니다.
- ※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,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발생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**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**합니다.
-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,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,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수행기관은 **1곳만 선택하여 신청** 가능하며, **신청 이후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**합니다.
- 최종 선정될 경우, **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수행기관으로 납부**해야 하며 **미납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**
- **(중복 불가 사업)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「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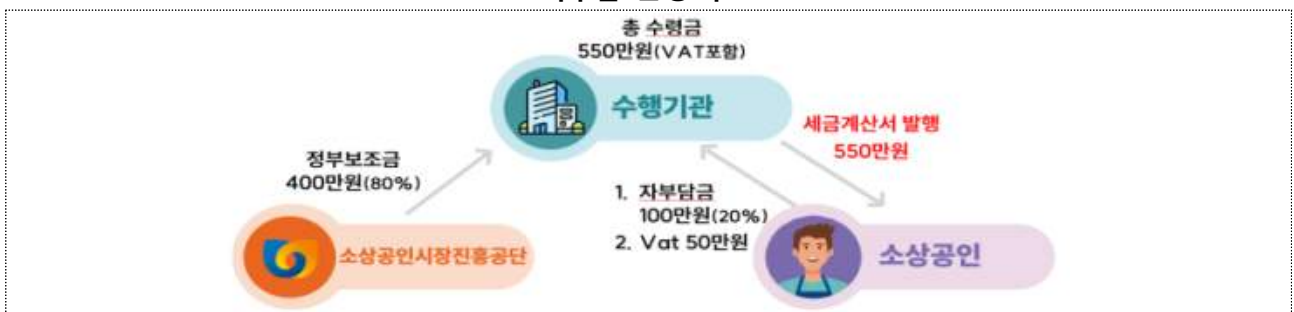
1. 모집개요

- **지원대상** :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
- **지원규모** : 소상공인 90개사 업체 내외 * 규모 변동 및 예비 선정 가능
- **지원내용** : 소상공인 총 550만 원 상당의 글로벌 패키지 지원
 - **(총 사업비)** 정부지원금(최대 4백만 원) + 자부담금(최대 1.5백만 원)

지원 내용 ※세부 지원 항목 기관별 카탈로그 참고※	국비	자부담
(입점지원 패키지) • 계정 가입을 위한 필수 서류 준비, 가상계좌 발급 등 (홍보·광고 패키지) • SNS 광고 마케팅,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등 (컨설팅 패키지) • 경쟁사 분석, 판매전략, 법무·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(특허·지재권 패키지) • 특허, 지재권(디자인) 출원 및 각종 인증 취득 지원	(사업비) 최대 400만 원 (80% 지원)	(사업비) 최대 100만 원 (20% 부담) + (부가세) 최대 50만 원 * 면세·간이 사업자는 해당 없음
총 계 (VAT 포함)	550만 원	

- **(운영방식)**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, 선택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으로 패키지 구성
- 패키지 종류는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며, 패키지 내 구성 항목은 개수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
- 선정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을 수행기관에 선 납부해야하며, 미납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책임은 소상공인 업체에 있음

< 자부담 운영 구조 >



○ (기관 별 지원내용) ※ 세부 지원항목은 기관별 카탈로그 참고 또는 기관 직접 문의

No	기관명	패키지	구성항목	비고
1	(주)제피로	입점지원 패키지	①입점지원	아마존, 이베이, 쇼피, 쿠팡, 라쿠텐 등
			②아마존 운영지원	FBA 입고대행, 입고 라벨링 대행 등
			③상세페이지 제작	
		홍보·광고 패키지	①외국어 카탈로그 제작	8P
			②아마존 A+콘텐츠 제작	
			③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	제품 리뷰 및 노출
			④마케팅 설정	초기 광고 설정, 마케팅 키워드 추출 등
		컨설팅 패키지	①상품개선, 판매 전략	해외 시장 조사, 경쟁사 분석 등
			②해외법인 설립	현지 법인 설립관련 비용, 절차 등
			③세무회계	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 등
			④수출 서류대행	통관, 수출 신고 등 관련 서류 관련
			⑤마켓 운영 실무	FBA실습 등 마켓 운영 실무 컨설팅
			⑥화장품 라벨링 현지화	현지 규정준수·제품 성분 적합 여부 등
		특허·지재산권 패키지	①미국 인증 등록	FDA(식품제조) CPSC(완구, 소비재), MaCRa(화장품)
			②일본 인증 등록	PMDA(화장품)
			③러시아 인증 등록	EAC 식품, 화장품, 생활용품
			④해외 지식재산권 출원	상표권 (미국, 일본, 러시아, 유럽)
			⑤수입 및 통관 대행	수입자 지정, 현지 통관 등
2	한큐 컴퍼니(주)	입점지원 패키지	①입점지원	아마존, 쇼피, 쿠팡, 라쿠텐, 라자다
			②제품사진촬영	19개
			③상세페이지 제작	
		홍보·광고 패키지	①숏폼 영상 제작	SNS광고용 4편
			②SNS브랜드 계정 운영	SNS콘텐츠 제작·업로드·관리
			③SNS광고비	SNS스폰서 광고비 지원
			④홍보영상제작	1편
			⑤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	팔로워 1만 이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4건
			⑥외국어 카탈로그 제작	8P
			⑦외국어 패키지	디자인 제작 1종
		컨설팅 패키지	①해외 시장조사·상품개선	타겟국가 시장조사 및 경쟁사 분석
			②세무·회계	절세, 부정이슈 대응
		특허·지재산권 패키지	①해외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	상표·디자인·특허 등

* 선정 업체 대상 지원 항목 외 교육 프로그램 등 추가 서비스 제공 예정(변동 가능)

2. 신청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2025. 5. 26. ~ 6. 13. 18:00까지

□ **신청방법** 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* 회원가입 → 사업신청(서류제출) → 평가 → 선정 순으로 진행 **[참고 1] 확인**

- (유의사항) 기관별 지원내용 확인하여 희망 수행기관 선택, 신청 후 기관 선택 변경 불가

□ **제출서류** :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,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

구분	연번	제출서류	비고
필수	1	신청서	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
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	3	제품 소개서	
	4	유효기간 내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	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(공단) 제공 요구 시, 생략 가능
	5	사업자등록증명	
	6	(국세)납세증명서(개인사업자)	
	7	지방세납세증명서(개인사업자)	
선택	8	(해당 시)가점 증빙서류	개별 첨부

* 공고 마이데이터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예정

□ **신청대상** : ①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보유기업, ②자부담 비용 납부가능 기업

- (지원제외)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

구분	내용
① 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[참고3]
② 휴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③ 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④ 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(※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)
⑤ 불공정 행위	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⑥ 기타	○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*(예시)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

3.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절차** : ①자격검증(적/부) → ②선정평가 → ③최종선정

□ **평가항목** :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

- **(자격검증)**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제한 대상 검증
- **(선정평가)**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, 우대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평가 실시,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

< 평가 항목(안) >

구분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정량	동일사업 참여이력(10)	• 글로벌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이력 - (1회 이상) 5점, (미참여) 10점	10
정성	해외 진출 가능성(35)	• 온라인 활용 역량(기존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, 상세페이지 보유 등)	10
		• 해외 진출 준비 정도(판매 제품 보유, 관련 인증 취득 등)	25
	제품 경쟁력(55)	• 시장 경쟁력(가격경쟁력, 수출가능성 등)	30
		• 제품 특장점(기술력, 품질, 디자인 창의성 등)	25
합 계			100
가 점			5
총 합 계			105

- **(가점사항)** 아래 항목 해당 시 가점부여(최대 5점)

no	항 목	증 빙	배 점
1	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②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③ 브랜드K 확인서	해당 시 + 5점
2	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증빙 미제출 * 공단 별도 확인	
3	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(TOPS) 2단계 선정 소상공인		
4	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수료생('22~'25년)		해당 시 + 3점

< 동점 선정 기준 >

- ① 평가항목 '제품 특장점', '시장 경쟁력', '해외진출 준비정도' 순 고득점 소상공인 선정
-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, 위원장 평가 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

□ 진행절차

①신청접수 수행기관별 구성패키지 확인. 희망 기관 1개 선택 소상공인 ~6.13	②평가 및 선정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공단→소상공인 6.23(예정)	③사전상담 수행기관 담당자와 사전상담·지원한도 내 패키지 구성 수행기관↔소상공인 ~6월	④자부담 입금 자부담 납부 및 계약서 (또는 서약서)작성 소상공인→수행기관 ~7월
⑥정산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↔공단 12월	⑧결과보고 글로벌 패키지 사업 수행 결과보고 수행기관→공단 ~11월	⑥만족도 조사 외부 용역사 활용 사업 만족도 조사 공단→소상공인 11월	⑤패키지 제공 패키지 지원 수행기관→소상공인 ~10월

□ 선정취소 :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, 선정취소 될 수 있음

< 선정 취소 사유 >

- ① 선정 이후 신청 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
- ② 선정 이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
- ③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- ④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⑤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- ⑥ 특별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⑦ 공단 또는 수행기관에 참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
- ⑧ 동일연도에 온라인판로지원 내역사업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선정된 경우(교육·기반구축·판촉행사사업은 제외)
- ⑨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신청 한 경우
- ⑩ 기타 공단에서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4. 기타 사항

□ 자부담 납부

- 소상공인은 계좌이체·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기관에 자부담금 납부
-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때, 공단 제휴 카드사를 통해 할부 납부 가능

□ 사업 연계

-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소상공인은 글로벌시장 지원(해외쇼핑몰 입점, 글로벌 쇼룸) 사업 선정 시 우선 선발 가능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,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*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.

*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1 경우, '홍길동'으로 사업 신청

-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,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합니다.

- 사업 신청 후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하며,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.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-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

- 소상공인24 사업신청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(총 14종), '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' 사업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*을 확인합니다.

* 사업자등록증명, 중소기업확인서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

-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사업자등록증명,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중소기업확인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

5. 문의처

☐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☎ 1644-5302

☐ (사업문의) 디지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☎ 042-363-7822/7823/7824

☐ 수행기관 문의

수행기관	문의처	수행기관	문의처
(주)제피로	02-6953-8998	한큐컴퍼니(주)	02-549-6162
	070-4680-5715		1599-8926
	070-4680-5681		(온라인 문의)
	(온라인 문의) https://zeffiroinc.com		www.canqcompany.com

☐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문의 ☎ 1357

[참고]

1.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
2. 글로벌패키지 지원사업 FAQ
3. 소상공인 확인 방법
4.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5. 사업신청서(소상공인 24 온라인 제출)

참고 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]

<사전준비>

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
※ 주 대표자 명의 가입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
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
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[참고. (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 시)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

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만 인정
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

참고 2**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 FAQ****1.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?**

- ☐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.
- 단,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그 외 지원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,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.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?

- ☐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사전준비>

- ① **소상공인 24 회원가입**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※ 주 대표자 명의 가입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- ② **기관·업체 정보등록**
 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 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- 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3. 원하는 패키지 항목을 구성했는데 총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?

- ☐ 정부지원금(400만 원)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자기부담금입니다.
 초과 금액만큼 수행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
4. 패키지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?

- ☐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패키지를 2개 이상 선택하고 각 패키지 구성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

5. 한 개 패키지를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구성 항목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?

- ☐ 네,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수행기관 '제피로'에서 제공하는 입점지원 패키지를 선택했을 경우, 입점지원 패키지에 있는 ①~③번 항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모든 구성 항목을 반드시 다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되, 정부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6. 부가가치세까지 선정된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?

- ☐ 네, 납부하셔야 합니다. 다만, 면세·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또한,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신고 기간(개인사업자 연 2회) 중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7. 사업 진행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○ 확인경로 : 소상공인24 → 신청이력확인 → 지원사업신청

• 임시저장 : 작성중인 상태, 신청 전 수정가능	• 보완제출완료 :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한 상태
• 신청완료 : 신청 완료, 신청 후 수정 불가능	• 보완완료 :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확인 후 완료한 상태
• 접수완료 :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한 상태	• 반려 : 문제가 발견되어 사업담당자가 반려한 상태
• 보완요청 :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상태	※시스템 관련 문의 ☎ 1644-5302

8.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?

☐ 처리상태가 “보완요청” 상태일 시 보완이 가능하며, 보완요청내역에 따라 보완서류를 첨부합니다.

○ 확인경로 : 소상공인24 → 신청이력확인 → 지원사업신청 → 신청 내역 클릭 → 보완내역 확인 후 ‘보완’ → 서류 첨부 후 ‘보완완료’

9. 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.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?

☐ 선정 축하드립니다. 선정이 되셨을 경우, 선정일자 기준 2주일 이내 신청하신 수행기관에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. 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 및 지원 등 수요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0. 평가결과 탈락되었습니다.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?

☐ 재신청 가능합니다.

11. 가점을 받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?

□ 가점항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**(백년 소상공인)** 지정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목형상점
가육성팀(042-363-7609)에 문의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**(로컬크리에이터)**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업체등록 후 마이페이
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**(업체등록)** ① 소상공인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② 마이페이지
→ ③ 기관/업체정보 클릭 → ④ 신규 업체등록 클릭 → ⑤
K-Startup에서 '20년 ~'24년 「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」을 수혜
받은 업체정보(사업자등록번호) 등록

<유의사항>

- (개인)**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동일한 경우만 기관/업체
정보 등록 가능
- (법인)**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달라도 등록 가능
(법인 실무자 또한 기관/업체정보 등록 가능)

- **(증명서 발급신청)** ① 소상공인24 → ② 마이페이지 → ③ 증명
서발급관리 클릭 → ④ 증명서발급신청 클릭 → ⑤ 등록 버튼 클
릭 → ⑥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클릭 → ⑦ 수혜연도
의 지원 유형 클릭 → ⑧ 하단의 발급신청 클릭
- **(브랜드K)**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개척팀(02-6678-9313~9315)
에 문의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**(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)** 입상여부에 대해서만 체크해주시면
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- (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) 2단계는 '25년 7월경 선정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그 이후에 가점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(디지털 특성화대학 / 글로벌패키지 / 해외쇼핑몰) 해당여부만 체크해주시면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그 외 문의사항은 아래 사업별 문의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사업별 문의처>

구분	가점 항목	문의처	기관
1	백년 소상공인	042-363-7754, 7609	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
2	로컬크리에이터	042-363-7735, 7736	
3	디지털특성화대학	042-363-7825, 7826	
4	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	042-363-7723, 7824, 7837	
5	해외쇼핑몰 입점지원 / 글로벌패키지	042-363-7822, 7823, 7824	
6	브랜드K	02-6678-9313, 9314, 9315	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
7	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	02-6678-9863, 9866	

12. 글로벌 패키지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까요?

- 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'온라인 판로지원사업'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해외 플랫폼 입점을 지원 받고 싶으시다면 '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'을 신청(042-363-7822~7824)하실 수 있습니다.
- 국내 판로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로지원을 희망하신다면, 아래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사업명	연락처
1	상품개선지원	02-6678-9873 / 9878 / 9879
2	콘텐츠제작지원	02-6678-9871 / 9876
3	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02-6678-9452 / 9455
4	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	02-6678-9469
5	라이브커머스 제작, 운영지원	02-6678-9465 / 9468
6	로컬상품관 입점지원	02-6678-9467
7	SNS 활용패키지	02-6678-9862 / 9865
8	홍보 지원	02-6678-9867
9	스마트물류 및 사후관리 지원	02-6678-9859 / 9864 / 9868 / 9869
10	O2O 융합 판매 기획전	02-6678-9894 / 9895
11	직매입	02-6678-9458
12	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	02-6678-9363 / 9367
13	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	02-6678-9364 / 9368
14	브랜드 역량강화	02-6678-9863 / 9866

참고 3**소상공인 확인 방법**

< ① 상시근로자수(5/10인 미만) + ② 소기업 매출조건 충족 ➡ 소상공인 >

(유의) 소상공인 사전 확인용 참고 자료로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와는 무관함

①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업 종	기 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**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**

참고 : <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>

<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>

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① 임원* 및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
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

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
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*의 연구전담요원

* '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
*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
④ 단시간근로자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
* '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
*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비고		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		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		

참고 4**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인 운영자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- 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

